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75
----------	-------

발의연월일 : 2025. 10. 22.

발 의 자 : 이학영 · 이해민 · 조정식
이정문 · 이주희 · 진성준
김남희 · 모경중 · 김주영
노종면 · 이재관 · 이용우
이재정 · 박지혜 · 정을호
서미화 · 강선우 · 정태호
한정애 · 김용만 · 장종태
박해철 · 임미애 · 이훈기
허영 · 한민수 · 채현일
박상혁 · 백승아 · 송재봉
박정 · 오세희 · 한병도
이건태 · 이병진 · 백혜련
안호영 · 이인영 · 문진석
김병기 · 김태선 · 김태년
의원(4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및 국회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

여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임. 청문회는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달리,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사·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핵심적인 국정감사 절차이므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함.

이에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조치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해당 부처 등에 이행 경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청문회에서 증인이 발언을 통해 사후조치를 약속한 경우 해당 증인에게 사후조치의 이행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관계 정부·행정기관 등에 제6항에 따른 사후조치의 이행 경과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5조(청문회) ① ~ ⑤ (생략)	제65조(청문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⑥ 위원회는 청문회에서 증인이 발언을 통해 사후조치를 약속한 경우 해당 증인에게 사후조치의 이행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u>
<u><신 설></u>	<u>⑦ 위원회는 관계 정부·행정기관 등에 제6항에 따른 사후조치의 이행 경과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u>
<u>⑥ ~ ⑧ (생략)</u>	<u>⑧ ~ ⑩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u>